# 안산시 시정소식지 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533	제출년월일 : 2024. 9.30. 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	olal O	
্ (মৃ	면집위원회 기 사교역할 및 기 위원회 존속	l능) 시정소식지 편집과 발행과정 참여로 시민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달 기한 연장) 시정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소식지의 생을 위해 존속 기한 연장
□ <b>주</b> ∫ ○ 편	, ,	존속 기한(2024. 12. 31. 字)을 5년 연장(안 제7조의2)
□ 개건	성조례안 :	【붙임 1】
□ 신	• 구조문대비	]표 : 【붙임 2】
□ 관계	ᅨ법령발췌서	] : [붙임 3]
□ 관력	변사업계획 <i>^</i>	] : 해당없음
·	_	: 해당사항 없음 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•	_ , . <b>_</b> ,,	) : 의견없음 024. 8. 16. ~ 2024. 9. 5.(20일간)
्र	<b>차 참고사항</b> 현행조례 : 방침결정문 :	

#### [붙임 1]

### 안산시 시정소식지 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정소식지·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2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레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	소관 실·과	홍보담당관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홍보담당관 박 종 홍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홍보기획팀장 박 향 미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명 균 (행정 2042)

### [붙임 2]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) 편집	제7조의2(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)
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	<u>2029년 12월 31일</u>
한다.	<b>.</b>